

2024학년도 15차

금모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
(병설유치원 통합)

금 모 래 초 등 학 교

금모래초등학교, 병설유치원 통합 운영위원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초.중등교육법」및「초.중등교육법 시행령」,「유아교육법」에 의거 금모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.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설치) 이회는 금모래초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금모래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
제3조(위원의 구성)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「유아교육법」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각각 가산하여, 총14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7명(유치원 학부모 1포함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(유치원교원 1포함)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선출관리위원회)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.
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.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,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
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
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5조(위원의 자격) ①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.

- ③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-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6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에게 회의,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위원은 연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선출) 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. 단, 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

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 단, 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

③ 지역위원의 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하며, 추천인원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.

④ 유치원학부모위원 및 유치원교원위원은 지역위원의 추천 및 선거권을 갖는다.

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.

⑦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

⑧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.

제8조(위원의 선출시기)

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
②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함.

제9조(운영위원 임기)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
③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/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의2(위원장 및 부 위원장)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,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제3장 회의운영 등

제10조(서류제출 요구) ①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
제10조의2(시정명령 신청) ①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의 시정명령을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 등)

① (회의소집)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.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.

② (의사결정)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초에 위원 선출 후 학교장이 소집한다.

제11조2(회의록)

- ①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회의록 작성시 내용 및 요약은 안건제출 발의자가 작성하고 간사가 정리한다.

제12조(회의참관)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12조의2(건의사항 처리) ①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다.

-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시 건의 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- ③ 심의결과 채택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.
- ④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사항의 수용여부를 결정 후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⑤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의견수렴, 학생대표 참여 등)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,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2. 교복, 체육복,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 3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4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영 및 사용
 5. 학교급식
 6. 그 밖에 시·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
 2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 3. 학교급식
 4.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
- ③ 운영위원회는 시·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. 자생조직의 출

석, 발언: 학교 내,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, 발언할 수 있다.

제14조(질서유지)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 경비)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
제16조(회의운영 규칙)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제17조(간사)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정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18조(위원 연수)

학교장은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체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